



집중이수제 운영 규정

제정일	2020. 3. 1
개정일	2023. 3. 1
개정차수	3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수업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된 집중이수제의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개념) 집중이수제란 개별 교과별 수업 특성에 따라 집중이수제가 수업의 질적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학점 당 이수시간(매학기 1학점 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수업 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제 3조 (근거) 학사내규 제 19조(수업)에 의거하여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조 (개설 원칙) ① 집중이수제 개설 시기는 정규학기,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집중이수제의 개설 요일은 평일로 한다. 단, 교외수업의 경우에는 요일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3. 1)

③ 집중이수제의 개설 시간은 주간으로 한다. 단, 교외수업의 경우에는 주간, 야간 모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

④ 학기 중에 실시하는 집중이수제는 교무처에서 매 학기 초에 집중이수제의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계획서를 수합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10, 2021. 4.15)

⑤ 방학 중에 실시하는 집중이수제는 매학기 종강 1개월 전에 학부(과)에서 교무처에 집중이수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10, 2021. 4.15)

⑥ 집중이수제 시행 과목은 최소 수강 신청 인원수(8명 미만) 사유로는 폐강하지 않는다. (신설 2020. 8.10)

제 5조 (개설 교과목) 집중이수제는 해당 학기(방학의 경우 직전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해당 교과목의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단, 집중이수제로 시행함에 있어 학사일정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

제 6조 (개설 가능 학점) 집중이수제 개설 가능 학점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7조 (승인) 집중이수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총장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 8조에서 이동 2020. 8.10]

제 8조 (세부 운영방법) ① 집중이수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해당 교과목의 목적과 특성, 운영 필요성을 파악하여 집중이수제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②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에서는 학생들과 학부(과)간 의견수렴을 통해 집중이수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여야 하며 반드시 수강신청 전에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해당 수업이 집중이수제임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교무처에 집중이수제 계획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강의계획서에는 주차에 해당하는 강의내용이 주차별로 세부적으로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집중이수제라고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15)

④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집중이수제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승인된 집중

이수제 계획서에 의거하여 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질 없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부(과)에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⑤ 집중이수제 기간 동안 담당교수가 반드시 참석하여 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⑥ 집중이수제가 종료된 후 일주일 안에 집중이수제 자체평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집중이수제 사진(별지 제2호 서식), 출석부를 점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15)

[제 7조에서 이동 2020. 8.10]

제 9조 (성적인정) 집중이수제 해당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생이 집중이수제 일정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결석으로 처리해야 하고, 학사내규 제 22조(출석부)에 의거하여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

제10조 (강사료 지급) 집중이수제의 강사료는 집중이수제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0. 8.10)

제12조 (삭제 2020. 8.10)

제13조 (개정) 규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된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 8.10)

집중이수제 자체 평가 보고서

1. 집중이수제 총괄 현황

과목명	실습장소	실습기간	학년(반)	참여학생	내역	비고

2. 집중이수제 수업 내역(시간대별)

일자	시간	수업내용	담당교수	일자	시간	수업내용	담당교수	일자	시간	수업내용	담당교수

3. 집중이수제 자체 평가

<p>1. 전체 실습 내용(강의계획서 상의 수업 목표와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p> <p>2. 학생 만족도(학생들의 집중이수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p> <p>3. 건의사항</p> <p>4. 기대효과(집중이수제로 진행했을 시의 장점 등을 포함)</p>

학부(과) 담당교수 (인)
 학부(과) 학과장 (인)

- 붙 임 1. 담당교수 학년반 시간표 1부.
 2. 집중수업 사진 1부.
 3. 결산내역 및 영수증 1부.
 4. 시설안전점검표 1부. 끝.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 8.10)

집중수업 사진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 일자별로 수업 사진 1장 이상 첨부